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

질 의	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
	‘주요 구조부분을 변경’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?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?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?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?

답 변

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3호) 제2조제1항제5호에서 “주요 구조부분을 변경”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,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☐ 다만,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**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**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☐ 여기서 **단위공정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의미**합니다. 산업의 특성 상 동일(유사)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증설, 교체 또는 개조되는 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질 의	② 단위공정 예시
	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3호) 제2조제1항제3호의 '단위공정'의 정의에 공정을 구분하는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데, 우리 사업장과는 맞지 않습니다. 혹시 참고할만한 다른 구분 예시가 있을까요?

답 변

☐ 우리 공단에서 발간한 안전보건실무길잡이의 주요 공정·작업별 개요의 공정 구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공정구분 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**아래 예시는 참고자료로써 특정 업종의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**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참 고	주요 제조업종의 공정구분(예시)

✓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업종별 공정은 <u>**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**</u>

업종	공정
식료품제조업	계류 → 도살 → 방혈 → 탕박탈모 → 절단·절개·적출 → 발골 가공 → 계량 계량 → 배합 → 분할 → 성형 → 발포 → 소성 → 검사
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	혼합 → 투입 → 사출 및 취출 → 사상 → 검사 → 조립 (사상 ↑ 분쇄)
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저장 → 이송 → 계량 → 혼합 배합 → 용해 → 성형 → 서냉 → 검사 재단 → 원판 투입 → 세척 및 건조 → 1차 접착 → 압축 → 2차 접착 → 포장 (스페이서 제작 ↓ 1차 접착)

1차금속제조업	주형 제작 → 용해 → 주입 → 탈사 및 사상 → 도장 및 건조
금속가공제품제조업	절단 → 용접 → 가공 및 사상 → 도장 및 건조
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	재단 및 절단 → 밴딩 → 경판 성형 → 용접 및 사상 → 소재 가공 → 조립 → 시험 및 검사 → 도장 및 건조 프레임 제작 → 부품 제작 → 조립 → 시운전 → 도장 및 건조
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	엔진/변속기 등 부분품 제조 ↓ (의장) 스템핑 → 차체조립 → 도장 → 의장 → 검수
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;의약품 제외	계량 → 혼합 → 반응 → 성형
반도체제조업	단 결정 성장 → 규소봉 절단 → 웨이퍼 표면 연마 → MASK 제작 → 산화 → 감광액 도포 → 노광 → 현상 → 식각 → 이온주입 → 화학 기상증착 → 금속배선 → 웨이퍼 자동 선별 → 웨이퍼 절단 → 웨이퍼 표면 연마 → 금속 연결 → 성형 → 최종 검사